

##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[김영실 의원 대표발의]

# 검토보고서

2024. 1. 25.

복지환경위원회

전문위원 서용관

##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

#### 1. 제안경과

○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김영실 의원 등 열 네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4년 1월 16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#### 2. 제안이유

○ 남양주 시민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폐 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 을 보호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과 정의,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함 (안 제1조~제3조)

- 나. 심폐소생술 교육계획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(안 제4조~제5조)
- 다. 심폐소생술 교육, 상설교육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 (안 제6조~제7조)
- 라.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지원과 홍보,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 함 (안 제8조~제10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관련부서 : 보건정책과

라. 입법예고 : 2024. 1. 16. ~ 1. 22.(6일간) / 의견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남양주 시민이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 도록 심폐소생술의 교육·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심페소생술은 환자의 생존율을 최대 3배까지 높일 수 있는 응급치료 법으로서, 심정지 환자 발생시 첫 목격자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환 자의 가족과 동료,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응급조치하기 위해 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확산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.
- 또한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리 요령과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, 지방자치단 체는 그에 대한 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음.
- 따라서 본 조례 제정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 향상과 응급처치 대응을 확산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시민에 대한 침익적 내용이 없는 자치사무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.

## 붙임1 관계법령

#### ☑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- 제3조(응급의료를 받을 권리) 모든 국민은 성별, 나이, 민족, 종교,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 국내 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.
- 제4조(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)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, 응급 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그에 대한 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.
- 제13조(응급의료의 제공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,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·운영,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,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응급의 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1. 구급차등의 운전자
  - 1의2.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·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  - 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
  - 3. 「학교보건법」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
  - 4.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「도로교통법」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 무원등
  - 5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
  - 6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·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  - 7.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

- 8.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·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- 9.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·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- 10. 「철도안전법」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·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- 11. 「선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·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
- 12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13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
- 14.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
- 15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
-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·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·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·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8. 4.>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,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## ☑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- 제8조(응급처치 교육·홍보 계획 수립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법 제 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·홍보를 위한 계획(이하 "교육·홍보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교육ㆍ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교육·홍보의 대상·내용·방법
  - 2. 그 밖에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·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교육·홍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의뢰하여 제1 항에 따라 수립한 교육·홍보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.

#### ☑ 「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」

- 제4조(교육인력의 자격)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  - 1. 「의료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
  - 2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
  - 3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
  - 4. 응급의료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
  - 5. 「소방기본법」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
  - 6.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

#### ☑ 「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

- 제7조(응급처치 교육) 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9조(응급의료의 홍보)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 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 인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자치법규안명
  -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
- 나. 재정 수반 요인
  - 제6조(시민 등의 교육)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 - 제7조(상설교육장의 운영) ② 제1항의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「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고시」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.
  - 제8조(지원 등) 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기관 ·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### 2. 미 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## 3. 미첨부 사유

○ 2024년도 사업운영 예산액(상설교육장 운영 제외) : 38,200천원

- (교육비) 350천원 × 80회 : 28,000천원

- (소모품비) : 400천원

- (사무관리비) : 9,800천원

○ 상설교육장 운영 시 예상액 : 45,948천원

- (인력)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채용 : 30,648천원

- (장비) 교육용 마네킹,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: 5,100천원

- (소모품비) : 400천원

- (사무관리비) : 9,800천원

※ 인력 채용 예산 및 교육장 접근성 문제 등 향후 여건이 조성될 때 상설교육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기관·단체 지원 : 지원 대상·규모·내용 등 구체적 산출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 추계 불가

#### 4. 작성자

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